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

1. 관련
  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41176(2021.12.16.)
  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9813(2022.3.4.)
  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2.3.18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**위중증, 사망자가 함께 증가**하고 **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**되고 있는 점과 함께 **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, 민생경제의 어려움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**사적모임 제한**을 일부 **완화**하며 **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**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내용(변경사항)
사적모임 제한	■ (현행) 7인 이상 금지→ (변경) 9인 이상 금지

※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

3.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**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**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·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

   ○ 한편,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**감염병 예방을 위해**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   ※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,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 적용은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,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가능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: **2022.3.21.(월) 0시 ~ 2022.4.3.(일) 24시**

나. 적용지역: **전국 17개 시·도***

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

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9813(2022.3.4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**2022.3.21.(월) 05시까지 유효**

② 2022.3.21.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**2022.4.4.(월) 05시까지 적용**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
○ **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(30종) 및 종교시설**

■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
■ 식당·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영화관·공연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도서관, 상점·마트·백화점, 종교시설

○ **고위험 사업장**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2) 모임·행사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•**(사적모임) <u>전국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</u>**

•**(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)**

- (~299명)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·행사 가능

- (300명 이상)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

↳ 단, <u>2021.12.16. 0시 이전</u>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,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(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)

※ 실내·외 체육시설에서 경기(시합)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까지 가능(사적모임 예외)

- (시험)수험생 간 1.5㎜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  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2: 전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) 교통시설

○ **대상시설**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4)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5)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6) 사업장

○ 유연근무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,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

7) 학교(등교)

○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

4.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, 인·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(종) 및 기타 미인가·미등록·무허가 시설의 경우,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.

5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○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
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2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인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전국 17개 시도지사

주무관 **홍명기**	행정사무관 **안웅식**	생활방역팀장 **병가** 2022. 3. 18.	사회전략반장 **손영래**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**이기일**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**류근혁**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**권덕철**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2925 접수 비상안전기획관-1789 (2022. 3. 18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/ http://ncov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1725 팩스번호 044-202-0000 / mk7069@korea.kr / 비공개(5)